



Vietnam Tax & Legal Handbook

2020 and beyond

kpmg.com.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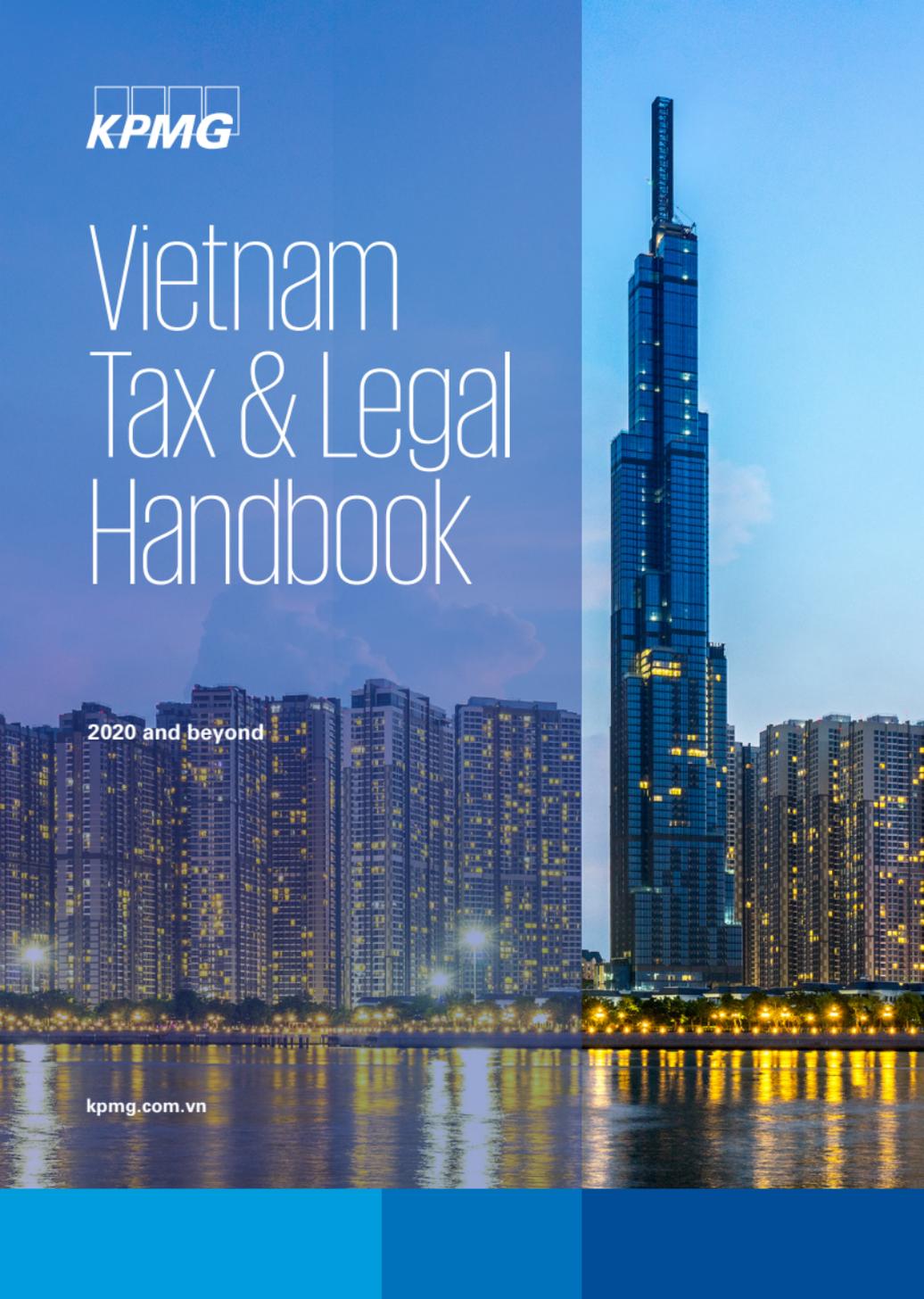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조세 | Taxation

06

베트남의 세법

세무행정

법인세 (CIT)

국제조세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국제조세협약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이전가격세제 (TP)

비거주자 자본이득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

수/출입 (Import/Export) Duties

고용관련세금 (SHUI)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개인소득세 (PIT)

기타세

Property Tax

Natural Resources Tax

Environment Protection Tax

Registration Tax (Stamp Duty)

상법 (Commercial), 고용노동법 (Labour and Employment Law)

29

법인의 형태

대표사무소 (Rep. Office)

지점 (Branch)

법인 (Legal Entity)

투자 인센티브

계약투자 (Contractual Arrangement Investment)

지분/자본 투자 (Share/Capital Acquisition)

법인설립 절차 및 Timeline

고용/노동 관련

- 채용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해지 통보 근로시간
- 연차 휴가
- 퇴직 수당
- 노동조합
- 비자와 임시거주증
- 노동허가증 (Work permits)
- 은행 및 외환관리
 - 은행계좌 - 직접투자
 - 은행계좌 - 간접투자
 - 외환관리
 - 이익배당 관련 규제
- 토지 (Land)
-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베트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형태
 - 지적재산권의 보호

부록

- Appendix 1 -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세율 (Foreign Contractor Tax Withholding)
- Appendix 2 -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조세협정국 리스트
- Appendix 3 - 자유무역협정국 리스트
- Appendix 4 - 개인소득세율
- Appendix 5 - 특별소비세율 (Special Sales Tax)
- Appendix 6 - 환경보호세율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 KPMG in Vietnam
- Contact Us

머리글



Warrick Cleine

Chairman & CEO
KPMG Vietnam

warrickcleine@kpmg.com.vn

KPMG 베트남의 세금 및 법률 핸드북 초판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1986년 Doi Moi에 의한 주요 정치 및 경제 개혁 이후, 베트남은 강력하고 활력있는 경제로 발전했으며 2050년까지 20대 세계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세계 은행 및 IMF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8년 GDP 성장률 7.1% (2017년 6.8%)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7.5% (58.2%, 2017) 및 인플레이션은 매년 2%-3% 사이입니다.

이 놀라운 성장 스토리는 베트남이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을 통해 세계 무역을 수용하려는 지속적인 의지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2007년 수많은 자유 무역 협정에 참여 베트남은 2018년 3월 8일에 CPTPP에 서명함으로써 많은 세금 장벽이 제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유럽 연합은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을 지역 이웃나라들과 차별화시킵니다.

이 2020 베트남 세금 및 법률 핸드북에 포함 된 정보는 2019년 12월 31일에 시행중인 법률, 법령 및 시행령에 적용되는 현행 행정 관행에 근거합니다.

이 핸드북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 된 정보는 개별 사실과 상황에 따라 별도의 독립적인 확인을 먼저 얻지 않고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이 2020 베트남 세금 및 법률 핸드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전문가 서비스 회사인 KPMG는 이 핸드북을 임문 가이드로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에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한글 번역본 활용시 주의사항>

- 본 문서는 독자 편의를 위해 단순번역 한 것입니다. 번역에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2020년 1월 1일까지의 법률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최신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를 업무에 참고 하시는 경우, 영문본의 내용과 최신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세|Taxation

베트남의 세법

베트남 세법의 입법 체계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뿐만 아니라 재무부 (MOF), 세무총국 (GDT), 지방세무당국 (세관당국포함)이 발행한 법령, 서한 및 공식 서한에 근거합니다.

베트남에는 자산, 자본 이득, 매출, 이익 또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세법이 존재합니다. 원천 징수세 또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베트남의 조세법은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조세 행정법에 의해 보완됩니다.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법인세 | Corporate Income Tax ("CIT");
- 외국인계약자세 | Foreign Contractor Tax ("FCT");
- 부가가치세 | Value Added Tax ("VAT");
- 특별판매세 | Special Sales Tax ("SST")
- 관세의무 | Customs duties;
- 개인소득세 | Personal Income Tax ("PIT"); and
- 사회보험 | Social Insurance ("SI"), 실업보험 | Unemployment Insurance ("UI") and 건강보험 | Health Insurance ("HI") 과 같은 고용세

또한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원세 | Natural Resource Tax ("NRT");
- 재산세 | Property Tax ("PT");
- 환경보호세 | Environment Protection Tax ("EPT"); and
- 수출관세 | Export Duties.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거주지, 출처, 공급처에 대한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베트남 과세의 영토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법의 적용은 물론 관련된 경우 국제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베트남도 최근 법적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실질과세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원칙은 2019에 소개된 터라 적용하면서 많은 질문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 또는 관세의 부정확한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불되지 않은 1 차 세액의 20 % 와 하루 0.03 %의 연체이자입니다. 사기 또는 조세회피의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일반적으로 10 년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조세 행정 | Tax Administration

베트남에는 관세 및 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법의 행정에 관한 법규가 포함 된 통합 조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64 개의 자치성이 있으며 각 지방에는 각 지방에 등록 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지방 세무 당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과세 법의 행정은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다른 행정 관행 또는 법률 해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영업 등록지 또는 거주지가 속한 성에 세금을 등록 (register), 제출 (file) 및 납부 (pay) 해야합니다. 따라서 여러 등록 장소 (예 : 부양 또는 독립 지점)가있는 납세자는 각각의 별도 등록 장소에서 지방 세무 당국의 세금 관리 대상이됩니다.

유권해석 | Tax ruling

납세자는 관련 세무 당국에 신청서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청은 관련 세무 당국에 의해 GDT 또는 MOF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베트남 총리는 세금 결정 요청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벌금

세무조사는 베트남 과세 환경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세무당국의 조사대상기간에 공식적으로 포함 되기전까지 조사 받지 않은 기간은 언제든지 조사대상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해를 다루며 다양한 범위를 커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등록 된 지방 세무 당국에 의해 수행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은 또한 특히 세금분쟁이 발생할 때 까다로운 감사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된 절차적 기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GDT, MOF, 감사원(State auditor)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세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행정법에는 모든 수입원에 대한 처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세금 부족분은 20%의 벌금에 연체이자율 0.03%를 더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회피의 경우 100 %에서 300 % 사이의 벌과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소납세를 자진 신고하면 연체이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세행정법 개정으로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안내를 따른 경우에 한해 과태료 면제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 면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과세 기간과 관련된 세금 부족에도 이 사항이 적용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베트남에는 일반적인 반부패 방지 규정이 없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실질과세원칙 (a substance over form rule) 이 도입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 원천 징수 또는 관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세무 조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베트남은 OECD 회원국이 아니므로 OECD 지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 Corporate Income Tax (CIT)

기본적인 CIT 과세대상기간은 12 월 31 일로 끝나는 12 개월입니다. 다른 과세기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CIT는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등록 된 모든 회사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 에 부과됩니다. 베트남 지점에 귀속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지점에 CIT가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 (및 외국 개인) 에 대한 CIT는 일반적으로 외국 계약자 세금 (아래 참조) 이라는 원천 징수 세 적용을 통해 징수됩니다.

법인세율과 세제 혜택

기본 법인세율은 20 %입니다.

법인세율은 특수한 업종 (예 : 교육 부문, 10 %) 에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굴 또는 에너지 부문 산업 (32 %, 50 %) 과 같은 다른 국한된 상황에서는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또는 사업 확장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있는)은 일시적인 CIT 세율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 투자 활동 또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리적 위치 (세제 혜택이 있는)
- 분야별 활동
- 투자 규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activity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특별 경제 구역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
-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인프라 개발, 환경 보호, 헬스케어, 교육, 출판, 신문 인쇄, 사회 주택 및 / 또는 조림을 포함한 분야별 활동
- 투자 자본이 많은 새로운 투자 활동 (프로젝트)

납세자는 현행 세금 규정에 따라 활동에 세금 인센티브 적용을 자체 평가해야 합니다.

세금 인센티브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지방세무당국의 행정해석도 달라

일관성 없는 적용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조건이나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세금 인센티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 또는 활동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핸드북의 범위를 벗어나며, 개별 사실과 상황에 따른 조언을 적극 권장합니다.

법인세 환급 및 납부

법인세 환급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 개월이 되는 월의 마지막 날에 마감됩니다. 12 월 말이 종료일 인 경우 익년 3 월 31 일입니다.

CIT는 모든 납세자(외국인 계약자 제외)에 동일 방식으로 징수되며, 납세자 사업의 규모, 매출, 복잡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CIT는 다음과 같이 수집됩니다 :

각 분기 종료 후 익월 30 일까지 4 회 분할 납부; 그리고 연말에 납부할 잔액이 있는 경우 익년 90 일까지 납부

분기 별 납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범용은 납세자가 분기 별 재무 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CIT는 사업 중단을 포함하여 다른 시간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IT는 관련 이벤트 후 45 일 이내에 납부 해야 합니다. 회계 연도에 대한 총 세금 납부액이 회계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의 80 % 이상이 아닌 경우 0.03 % (일별)의 연체이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 소득은 세무 조정 후 회계 이익 (베트남 회계기준에 근거)을 참조하여 계산됩니다. 세무 조정에는 공제 불가능한 지출을 제외한 기타 평가 가능한 소득의 산입이 포함됩니다. 과세 소득은 또한 전 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본 이득은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불공제비용

비용은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포함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납세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복된 비용(예: 관리비)으로 간주되는 경우 CIT 목적의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비용 목록(단순예시)은 CIT 목적상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용 (이전가격관련 문서화 포함)
- 지정된 감가상각률을 초과하는 감가 상각
- 이자비용 (EBITDA의 20 % 초과분)
- 정관상 납입 자본이 완전히 기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자비용
- 이자율이 해당 베트남 주립 은행 금리의 1.5 배를 초과하는 이자
- 일반 회계 조항 (재고 폐기 및 망실, 불량 손실 또는 대손상각비, 보증, 직원보상 등)
- 노동 계약, 회사 고용 정책 또는 노동 계약에 문서화되지 않은 직원 보수
-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직원 복지비용
- 미실현 외환 환산 손익
- 기부금 및 선물
- 세금 납부 (매입 VAT 포함)
- 행정상 벌금 및 과징금

베트남의 과세 대상 고정사업장("PE")에는 베트남 PE에 할당 된 본사 비용의 공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CIT 비용 공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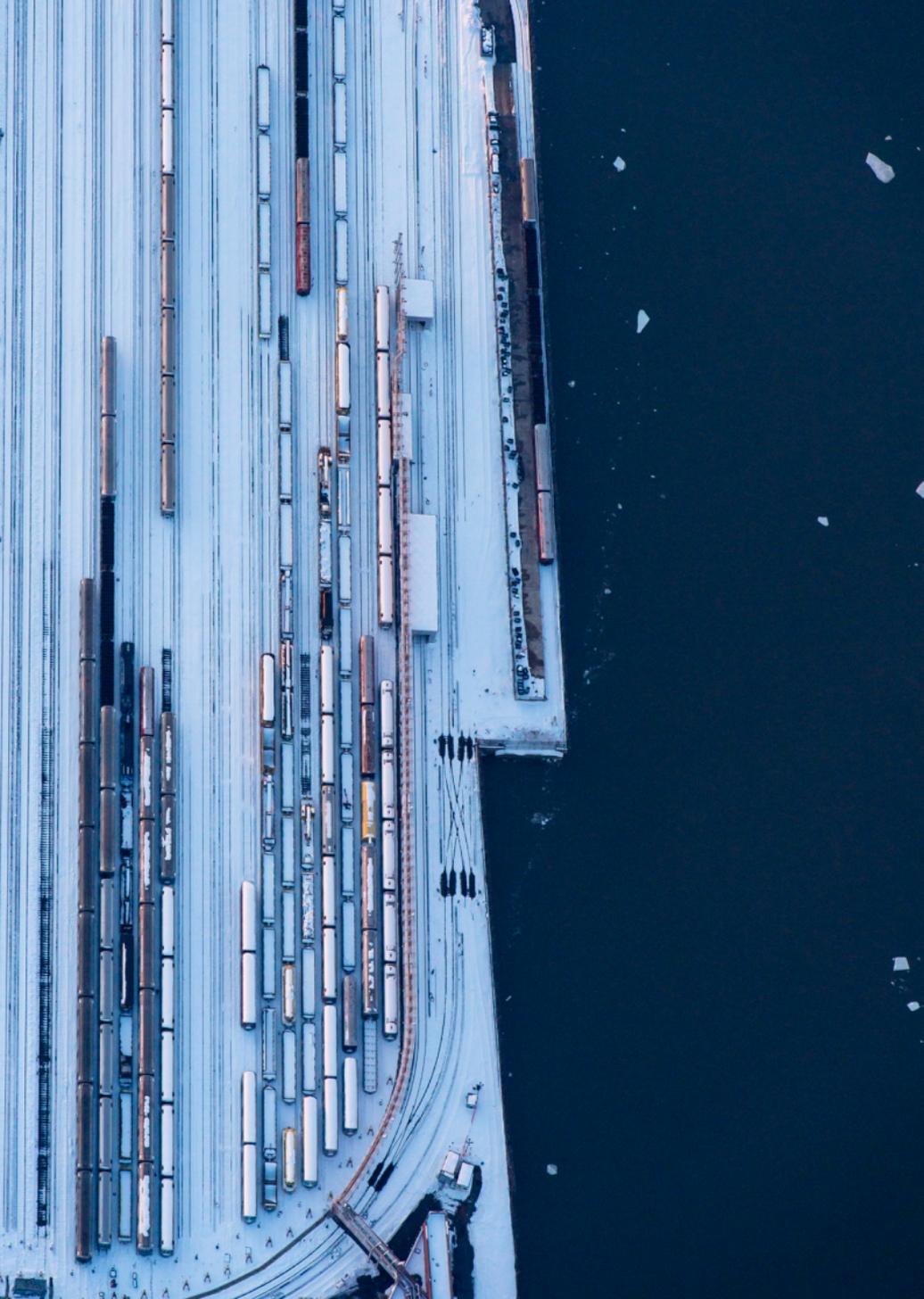
Other considerations

베트남은 연결법인세제도가 그룹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누적손실을 같은 법인세 그룹의 구성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 소유권을 가진 회사 간에 손익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세무상결손금은 이월하여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말부터 5년간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손실은 이전 과세 연도의 이익과 상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연구 개발("R&D") 지출(연간 과세소득의 10%)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R&D 지출은 세무신고절차 중 하나로 매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격 R&D 지출은 베트남에서 수행된 R&D 활동에서 발생해야 하며 적절한 송장과 지원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과 같은 특정 산업에는 서로 다른 세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International Tax

베트남은 OECD 회원국이 아니므로 OECD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2017 년 6 월 OECD의 세원잠식 및 이익이전에 관한 포괄적 프레임 워크 ("BEPS")에 100 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조약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OECD의 다자간 협약을 채택하기로 아직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 배당, 이자, 로열티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는 다음과 같은 국내 원천 징수 세가 적용됩니다 :

Category	국내 원천징수 세
배당	Zero
이자	5%
특허, 발명, 산업재,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 (전체적으로 "기술 이전"이라고 함)를 사용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 할 권리를 지불 한 로열티	10%

이러한 국내 원천 징수 세율은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의 적용을받습니다(아래 참조). 국제 조세 협약이 원천 징수 세율을 낮게 지정하고 국내 조약 신청 절차가 채택 된 경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조세 조약 요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협약

국내 조세법은 이론상 국제 협약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국제 조세 협정의 적용은 또한 국내에 도입 된 조약 신청 절차의 적용을받으며, 따라서 국제 조세 협정의 적용은 5년의 제한 기간 (즉, 유효한 조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egrity Rule은 수혜 소유권 및 조약 남용과 관련하여 존재합니다.

수혜 소유권을 입증 할 수 없는 수령인이 소득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경우 조약

혜택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조세 협약 및 특정 원천 세율 목록은 부록 2를 참조하십시오.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베트남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지급에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국가 간 지급 약정에 대해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원천징수 조세 약정은 '외국인 계약자 세' ("FCT")라고 하며, 베트남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비거주자로부터 베트남의 CIT와 VAT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계약자'로 불리는 비거주 기업 또는 개인에게 결제되는 지급에 적용됩니다.

상품 수입에 관련 서비스 (베트남내 설치 또는 물류 서비스 등)의 제공이 수반되지 않은 상품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T는 CIT와 VAT로 구성됩니다. 원천 징수율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본 재화 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세목을 각기 다른 FCT 적용세율과 결합한 계약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CT 원천 징수율은 부록 1을 참조하십시오.

¹VAT는 또한 세관 신고 과정을 통해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 할 때 징수됩니다. 그러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된 관세가에 대해 계산되는 반면, FCT 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지불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VAT는 동일한 수입 상품에 대해 두 번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 납세자 등록이 되어 있고 FCT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1차적인 FCT 원천징수 의무는 거주자 지불인(물품/서비스를 공급받는자)에게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FCT 지불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접법 | Direct method;
- 차감법 | Deduction method; and
- Hybrid method.

이 세 가지 방법의 주요 구분점은 비거주 외국인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등록 의무와 신고 의무입니다.

1. Direct method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직접 방법으로, 비거주자는 베트남에 등록 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베트남 지불 인이 징수하고 송금하는 전통적인 원천 징수 세가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지불 인이 원천 징수 의무자로 행동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 방법이며 비거주 외국인 계약자가 취한 조치 또는 조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 방법과 관련된 준수 의무는 전적으로 지급인에게 있습니다.

2. Deduction method

이 방법은 비거주기업에 등록 및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로컬 기업과 동일하게 VAT 및 CIT 를 신고합니다. 또한 CIT 는 20%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불 기한을 정하게 되고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CIT 준수 및 납부 의무가 부과되며, 실무적으로는 거의 선택되지 않지만 특정 계약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Hybrid method

T이 방법은 Direct 및 Deduction Method 의 조합입니다. 즉, 비거주 기업은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하고 일반적인 국내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지만 CIT를 등록하고 납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CIT는 지불 인을 통한 원천세로 직접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 rule

위에서 설명한 베트남 CIT 법령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칙에 따라 베트남으로 송금되지 않은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지배 외국 기업' 제도가 포함됩니다.

귀속외국인 소득은 현재 베트남 모기업 납세자가 양허세율 (우대 세율) 을 누리고 있더라도 20% 의 CIT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회사가 베트남 CIT와 "유사한" 외국인의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베트남의 세금을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베트남의 세금 수준까지 상세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소득, 이익 및 세금 공제액을 VND로 환산하는 방법은 불분명합니다. 즉, 거래 날짜에 현물 FX 환율로 적용할지 또는 주별, 월별 또는 연간 평균을 통화 환산 목적으로 채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이익의 귀속 및 과세는 복잡하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 | Transfer pricing

베트남은 특수관계자간의 이전 가격에 대해 적용 가능한 자세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할권과 달리, 이 규칙은 국내 및 외국 특수관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OECD 회원국이 아니며 따라서 OECD 가이드라인에 얽매지 않지만 베트남의 이전 가격 규제는 OECD 가이드라인과 대체로 일치하며 특정한 독특한 현지화 된 규정이 존재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1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는 공동소유(직접 또는 간접 보유율 25% 이상) 또는 법에 따라 정의된 다른 약정을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기업입니다.

보고 의무 | Reporting obligations

이전 가격 규칙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연간 CIT 보고서의 일부로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될 정보는 광범위하며, Form의 준비는 비교적 복잡 할 수 있습니다.

These forms are:

- Form 01 - Information on related parties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 Form 02 - List of information, documents required in Local File;
- Form 03 - List of information, documents required in Master File; and
- Form 04 - Country by Country report (only applicable to Vietnamese multinational group).

이양식은 과세 연도 종료 후 90 일 또는 그 이전에 연간 CIT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2 월 31 일이 종료일 인 경우 다음 해의 3 월 31 일입니다.

문서화 의무 | Documentation obligations

위에서 언급 한 신고 절차 외에도 베트남은 면제되지 않는 한 로컬 파일, 마스터 파일

및 국가 별 보고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즉, 베트남에서는 3 계층 문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서는 베트남어로 유지 관리하고 현지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가격 문서가 현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요건 (위)의 경우, 이전 가격 문서는 세금 연도 종료 후 90 일 또는 그 이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이전 가격 문서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

- 500 억 VND 미만의 수익(매출) 및 300 억 VND 미만의 특수관계자 거래 ; or
-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가

있으며 APA 규정에 따라 연간 APA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or

- 2 천억 VND 미만의 수익으로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정된 수익 비율을 충족합니다.

벤처마킹 분석을 포함한 문서는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가산세와 지연이자 | Penalties and interest

납세자가 이전 가격보고 및 문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전 가격 조정을 위해 내부 비교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CIT를 초래하는 이전 가격 조정은 20 % 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ethodology considerations

비교가능한 통제되지 않은 가격, 재판매 가격, 비용 가산, 이익 분할 및 유사 이익 방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시불 (lump sum) 또는 연말 하향 (downward) '이전 가격 조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가격 조정'은 이전 가격 분쟁 및 CIT 목적으로 강제 불가능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글로벌 이전 가격 정책의 로컬 구현에 대한 조인을 구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자본 이득세 규칙은 베트남 회사가 증권 비공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자에 의해 베트남 법인 및 세 법상 거주자 회사의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 처분)으로 실현 된 자본 이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제 조세 조약의 적용을받습니다. 실현 자본 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 %입니다.

현재 그룹 롤오버 구제 조치가 없으며 모든 양도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검토 중입니다.

자본이익은 주식의 원가기준액을 차감한 대가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보통 주식의 원가 기반은 출자된 주식 자본(Charter capital이라고 함)을 참고하여 계산되지만, 이전 주식 양도가 발생하여 현재 소유주의 원가 기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 시장가치 대가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보통 주식매수계약을 통해 문서화됩니다.

내부 그룹 재편성 및 기타 거래 양식(예: 주식 교환을 위한 지분)이 가치평가 고려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베트남 기업이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의무 및 지급의무의 시기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들이 법적 문서화(예: 서명된 주식매수계약)를 체결한 후 10일 후이거나, 그러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 승인을 얻은 후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에 의해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보호된 자본 이득 조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조약 청구는 별도의 조약 허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인이 베트남 거주자인 경우, 이전되는 베트남 기업은 이러한 신고 및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상장주식 | Listed securities-Public

비거주자에 의한 유가증권(공영합동 주식회사 및 특정 채권의 지분)의 처분은 간주기준으로 양도차익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받은 대가의 0.1%로 계산되어 양수인이 보유하여 관련 세무당국에 송금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주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처분은 실현된 자본이익의 20%로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간접세 | Indirect Taxes

부가세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VAT)는 베트남에서 판매 또는 소비되는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및 기타 품목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세금입니다. 베트남은 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출 상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은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또는 영세율이 아닌 한) 지정된 세율로 VAT가 부과됩니다.

VAT calculation(계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VAT\ payable = Output\ VAT - Input\ VAT$

매출 VAT는 판매 또는 공급 된 과세가능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 (판매 가격)에 관련 VAT 요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매입 VAT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지불 된 VAT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인보이스를 통해 문서화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공제 방법이라고합니다.

VAT rate(세율)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10%의 표준 매출 부가세율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필수 품목으로 간주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는 5%의 VA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물품 및 서비스는 물, 미가공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농산물 및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및 교육용 도서,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서비스, 소셜 하우징 및 기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 예시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외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에는 VAT 세율이 0%로 적용됩니다. 국내 수출 처리 구역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도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밖에서 소비된다는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슈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 VAT 는 아래 설명과 같이 징수됩니다.

수출재화

수출 상품은 0세율로, 여러 조건이 충족된 경우 특정 상황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매출 VAT에 대해 공제하거나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서비스

베트남에는 서비스가 언제 수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서 공급되었는지 결정하거나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공급 장소 규칙이 없습니다. 대신, 베트남 밖에서 서비스가 "소비"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납세자의 특정 사실적 상황을 설명하는 다양한 해석이 발행되었지만, 소비 장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침도 나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된 것으로 간주되는 수출 서비스는 0% 세율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 VAT(즉,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따라 지불된)를 매입 VAT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수출된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광고 및 호텔 관리 서비스,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기타 관련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수출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논쟁의 여지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재화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 신고 프로세스²와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에 대한 역청구 시스템을 통해 징수됩니다. 즉,

VAT는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 징수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계약자 세금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된 수입금액과 수입세(있는 경우)에 특별판매세 또는 환경세(해당되는 경우)와 같은 기타 적용세(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율로 계산되며, 이는 수입 시에 납부됩니다. 면세가 아닌 경우,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율은 0%에서 10%까지 다양합니다.

수입서비스

수입 서비스에 대한 VAT는 외국인 계약자 세금 제도를 통해 수입 서비스에 따라 역청구 시스템을 통해 징수됩니다. 이는 납부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을 관련 과세당국에 송금하는 역청구제도와 유사합니다. 면세 또는 0%세율이 아닌 한 서비스 수입에는 다른 VAT 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비율은 0%에서 5%까지 다양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계약자 세금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재화와 서비스

다음과 같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은 VAT에서 면세 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사용권 판매 (한도 내)
- 교육 서비스
- 대출 (대출 및 신용 카드), 리스, 금융 파생 상품, 외화 거래, 부채 인수 관련 금융 서비스
- 자금 관리 서비스
-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 의료 서비스
- 노인 케어 서비스
- 대중 교통 서비스 (버스)
- 기술 이전

면세품 및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불 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가능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혼합 공급

매입 VAT는 VAT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해 10%, 5% 또는 0%의 비율로만 공제 (또는 한도에 따라 환불) 될 수 있습니다. 매입 VAT는 면세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해 공제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면제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혼합 공급이 있는 경우, 매입 VAT가 공제 (또는 제한에 따라 환불) 될 수 있습니다. VAT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비례하여 매입VAT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부가세 과세 가능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라이선스나 거주자로 등록된 지역에서 VAT보고 및 납부 목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이 베트남의 여러 위치 (즉, 지점)에 등록 된 경우 각 지점 위치에 VAT 목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연간 수익이 500 억 VND 이상인 납세자는 매달 VAT를 등록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VAT는 익월 20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준액 이하의 매출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VAT는 분기 말 30 일까지 분기별로 납부 되어야 합니다.

Refunds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엄격한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VAT 환급은 매입 VAT가 3 억 VND를 초과하는 수출 상품에 대해서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판매세 | Special Sales Tax

특별판매세(SST)는 Multi-stage 판매세이지만 베트남 내에서 수입하거나 판매되는 법률상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즉, 그 적용범위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SST는 부가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대해 지불된 SST는 SST의 적용을 받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대해 공제됩니다.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에는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이 세율은 부록 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판매세가 과세되는 제품

다음 제품에는 SST가 적용됩니다 :

담배 제품 (담배 및 시가), 맥주, 와인, 주류, 자동차 (24 석 미만), 오토바이, 비행기, 보트 에어컨 (90,000 BTU 미만), 카드 놀이 및 휘발유

SST는 수입 및 / 또는 후속 상품 판매시 징수되며, 결과적으로 SST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과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SST는 신고 된 수입 가치에 따라 부과 및 수금되지만 도매 가격 (베트남 시장에 재판매 할 때)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됩니다. 유사하게, SST는 완제품 (예를 들어,



담배 제조)의 판매 뿐만 아니라 제조 투입물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SST를 계산하고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 또는 판매 가격에는 SST 법에 정의된 관련 당사자 거래에 사용된 가격이 SST 납부를 줄이기 위해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정 방지 방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Services providers (and services) subject to SST

골프 클럽, 디스코텍, 마사지, 노래방, 카지노, 잭팟 게임, 베팅 및 복권에는 SST가 적용됩니다.

SST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 부문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판매시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 클럽의 골프 요금과 식음료에는 SST가 적용됩니다.

수입/수출 관세

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 및 수입(및 수출) 관세 부과 및 징수에 통일 통관 신고 절차를 적용합니다. 완료되면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베트남은 또한 수입품이지만 보세 저장, 자유 무역 지대 또는 자유 무역 지대 간의 환적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세관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무역 지역으로의 수입 또는 임시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관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세관 신고서는 일부 경우 전자 또는 종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 관세 면제

다음 수입 물품은 수입 관세에서 면제되지만 베트남에서 통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투자 장려 프로젝트의 고정 자산을 갖추기 위해 수입된 기계 및 장비, 특수 운송 수단, 재료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어야 함)
- 특수 프로젝트 (예: 의료 기기 제조, 특별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설립된 프로젝트)
- 임가공 계약에 따른 수출 상품의 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용품, 구성 요소, 상품,

기계 및 장비

- 수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구성 요소, 소모품 또는 소모품.
- 특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장비 (예: 전시, 제품 테스트, 보증 수리 또는 보증 교체)
- 기타 (다른 면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 관세 계산

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장소와 시간에 징수됩니다.

수입 관세 = HS 분류 코드 (정확한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에 신고된 과세 대상 가치 (다른 값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 (예: 환경세 또는 특별 판매 세)을 곱한 값.

이 수입 관세 계산 프로세스는 자유 무역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세관 평가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다양한 반부패 방지 규칙 (과소신고금액과 연관되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 관세는 관세 계산 방법에서 제외됩니다.

수입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 통상적인 관세율;
- 특혜 관세율 (MFN) 과
- 특별 우대 관세율 (FTA).

모든 관세율 목록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 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수입품은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면 특별세율이나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품은 반드시 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목록은 부록 3을 참조하세요.

재화 수출

일부 수출품은 수출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Free trade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and export processing centres

베트남에는 많은 경제 특구와 수출 가공 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수입관세를 면제/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수입제도

베트남은 임시 수입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 임시 체류하기 위한 기계류 및 기타 물품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수 목적을 위해 임시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예: 건설 활동, 전시회, 제품 테스트, 보증 수리 등)

거래 목적으로 임시 수입 된 물품은 임시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까지 베트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연장은 제한적입니다 (즉, 배송 당 2 회, 연장 당 30 일).

임시 수입 유형에 따라 다른 의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 된 상품은 신용 기관 (또는 수입 관세와 동등한 보증금)의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관세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지만 재수출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입

이러한 중고 기계 및 장비가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및 기타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 규정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10년 이하의 중고 기계 및 장비(*)와 20년 이하의 일부 유형만 베트남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10년 이상도 가능



고용관련세금 | Employment Taxes

고용주는 개인소득세(직원을 대신하여)를 징수하고 납부 할뿐만 아니라 직원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보험 및 노동 조항 기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SHUI)

베트남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사회, 건강 및 실업 보험 (SHUI)에 대한 다양한 기여 의무를 부과하지만, 아래에 설명 된대로 고용주와 직원의 기여금을 수급 및 송금 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베트남 시민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에만 적용됩니다.

SHUI는 근로 계약에 따라 급여 및 임금과 특정 종업원 급여에 대해 부과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 최저 임금 (아래 참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Vietnamese citizens

등록된 노동 계약 하에서 일하는 베트남 시민을 위한 SHUI의 고용주 및 직원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Social	Health	Unemployment	Total
Employer contribution	17.5%	3%	1%	21.5%
Employee Contribution*	8%	1.5%	1%	10.5%

* PIT 계산시 과표에서 차감 가능

17.5%의 사회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기금, 직업병 및 사고 기금, 퇴직 및 사망 기금으로 나뉩니다.

사회 및 건강 보험료는 법정 기본 급여의 20 배로 제한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법정 기본 급여는 VND1,490,000입니다. 실업 보험료는 법정 최저 임금 인 20 배로 제한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소 지역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 employees working in region I: VND 4,180,000
- For employees working in region II: VND 3,710,000
- For employees working in region III: VND 3,250,000
- For employees working in region IV: VND 2,920,000

Foreign workers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불에는 사회 보험과 건강 보험만 적용되며, 베트남 시민과는 다른 요율이 적용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불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Soci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적용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 베트남 당국이 부여한 취업 허가, 실무 증명서 또는 실무 면허; 또는 무기한 노동 계약 또는 만기가 1년인 계약	무기한 근로 계약 또는 3 개월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 법률에 따라 급여와 보수를받는 사업 관리자
Exemption 면제	회사내부적으로 파견중인 외국인(주재원) 은퇴 연령에 도달 한 외국인 (여성 55세, 남성 60세)	Not applicable 해당사항없음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건강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Social	Health	Unemployment	Total
From 1 December 2018 to 31 December 2021	Employer contribution	3.5%	3%	Not Applicable	6.5 %
	Employee Contribution*	0%	1.5%	Not Applicable	1.5 %
From 1 January 2022 onwards	Employer contribution	17.5%	3%	Not Applicable	20.5 %
	Employee Contribution*	8%	1.5%	Not Applicable	9.5 %

* PIT 계산시 과표에서 차감 가능

17.5 %의 사회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기금, 직업병 및 사고 기금, 퇴직 및 사망 기금으로 나뉩니다.

현지 근로자 (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 및 건강 보험료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는 크게 증가 할 것이며, 현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Reporting and payment obligations

고용주는 현행 규정에 따라 위에서 언급 한

보험 의무를 고용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자체 평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일반적으로 직원 및 고용주 부담금에 대해 SHUI의 지불을 월 단위로 납부 할 책임이 있습니다. SHUI 기부금은 매월 말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신입 사원에 대한 SHUI 등록은 직원이 노동 계약에 서명하고 SHUI에 기여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마감됩니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고용주는 직원과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PIT는 해외 제후사가 현지 베트남 회사에 파견하는 직원 또는 계약업체와의 정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PIT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익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PIT는 분기 종료 후 30일에 마감되는 분기별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PIT에 대한 연간 확정 신고는 과세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Trade union contributions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는 기업은 사회보험 기여도에 따라 2%의 노동조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원인 직원들도 1%(max)의 노동조합비를 기부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법정 기본급의 10% 즉, VND 1,490,000)입니다. 통상 이 금액은 급여를 통해서 원천징수됩니다.



Personal Income Tax ("PIT")

베트남에서 세무적 거주자인 개인들은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이 PIT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자본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합니다. 베트남에서 세무적으로 비거주자인 개인들은 베트남에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PIT를 적용받습니다.

거주자 판단 | Tax residency

베트남의 거주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 베트남에 183 일 이상 또는 도착 일로부터 12 개월 연속으로 거주 또는
- 세무 연도에 183 일 미만 동안 베트남에 거주하지만 베트남에 영주권을 유지하며 다른 국가의 세무적 거주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Tax rates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는 다른 PIT 세율이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다른 소득 범주 (예 : 부동산 또는 기타 투자 매각으로 실현 된 자본 이익)에 대해 고정 수입 비율뿐만 아니라 고용 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 범주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부록 4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PIT returns and payments

통상적인 과세 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거주 첫 해는 도착일로부터 12 개월의 기간이 첫 해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거주 2년차 부터는 달력 연도와 출국일까지 기간 중 짧은 기간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출국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발 월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당 됩니다.

개인들은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대로 베트남 고용주가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한

분기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기별 세금 신고서는 분기 종료 후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PIT 연간 또는 최종화 수익은 연말 이후 90일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한 해의 달력은 연도에 따라 3월 30일 또는 3월 31일이 됩니다.

2020년 7월부터는 현행 90일의 마감일이 아닌, 모든 납세자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PIT를 신고하는 연간 PIT 신청 마감일이 4월 30일입니다.

주재원 직원은 배정 종료 및 베트남 출국 시 최종 베트남 PIT 책임을 신고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최종 반환일은 베트남 출발일로부터 45일 뒤입니다.

연간 세금 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PIT도 과세 연도 후 90일 또는 확정 신고 4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empt income

다음 항목은 면제 (고용) 소득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PI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점심 / 중간 수당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직원 자녀 학비
- 집에서 직장으로 직원이 통근하기위한 렌터카
- 휴대폰 수당
- 일회성 재배치 수당
- 본국 휴가 항공료
- 의료 수당
- 회사 정책에 따라 지불 한 출장 당 일당
- 결혼식 / 장례식 수당

소득이 면제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됩니다.

Foreign income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PIT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 관할권에서 이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베트남 거주자에 의해 벌어들인 외국에서의 소득 또는 이익도 베트남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외국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액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중 평가/ 배분되는 베트남 규모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분 비율은 해외 소득 금액과 평가 대상 소득 총액의 비율과 같아야 합니다.

초과 외국인 세액 공제는 이월할 수 없으며 향후 외국인 수입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PIT 계산을 위해 외화 소득을 VND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 창출 시점에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이 발표한 실제 매입 환율입니다.
- 베트남에 은행 계좌가 없는 개인의 경우, 소득 창출 시점에 베트남의 ("베트남 은행") Vietcombank의 실제 매입 환율입니다.



Other Taxes

재산세 | Property Tax

베트남은 토지 가치에 따른 연간 재산세가 없습니다.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LUR")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LUR는 토지에 대한 장기 임대와 유사하며, 이러한 LUR의 기간은 토지의 유형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LUR은 관련 토지 사용권 기간 동안 선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LUR의 성격은 LUR의 종류에 따라 CIT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LUR의 소유자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지불해야 하며 토지의 위치에 따라 0.03%~0.15%의 비율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Natural Resources Tax ("NRT")

베트남은 석유, 광물, 천연 가스, 임산물 및 물을 포함한 천연 자원 개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냉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NRT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지정된 천연자원의 추출 또는 사용을 위해 지정된 요율로 부과됩니다. 세율은 이용되는 천연자원에 따라 다르며 1%에서 40%까지 다양합니다.

추출한 자원(또는 소비)에 대해 단위당 지정된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베트남은 또한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특정 천연자원의 추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의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다른 베트남 세법을 대체하거나 다른 베트남 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대한 논의는 본 세금 및 법적 지침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환경세|Environment Protection Tax

환경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나 제품의 수입과 생산은 환경보호세("EPT")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석유 제품(휘발유, 윤활유, 디젤), 비닐 봉투, 특정 화학 물질 또는 가스의 수입은 다른 비율로 EPT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부록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Registration Tax

베트남은 자산의 양도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토지 사용권("LUR"), 자동차, 보트, 항공기 등과 같은 특정 자산의 구입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 의해 소유권을 등록하기 위하여 1회 납부해야 하며,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무관할 또는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지방세무관할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LUR를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세율에 자산매입가격을 곱한 금액을 세율로 계산하여 매입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Asset category	Tax rate
부동산(LUR) - 실제 지불된 가격이 아닌 인민위원회가 설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LUR 등록을 위한 등록세는 VND5억 상한이 있습니다.	0.5%
Water-borne vehicles, barges, motorboats, tugboats, ships, yachts and aircraft	1%
사냥, 훈련, 스포츠용 총기 중양 등급 도시에 위치해 있지 않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동차 및 유사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세율 10%가 적용되는 일부 특례 제외)	2%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located in centrally graded cities	5%



Commercial, Labour and Employment Law in Vietnam

Forms of Investment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

- 신규 법인의 설립
- 기존 법인의 자본 취득을 통한 투자
- 계약상 약정에 의한 투자: 타 로컬업체 혹은 외국투자자와 체결한 비즈니스 협력 계약 ("BCC"); 베트남 국가 기관과의 민간합작투자사업 ("PPP") (예: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and Build-Transfer ("BT") Agreements);

Indirect investment

- 증권 거래소를 통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거래
- 증권투자자금(securities investment funds)을 통한 방법
- 타 중개 금융 기관을 통한 투자

Forms of Commercial Presence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Commercial Presence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RO")

대표사무소 형태는 베트남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하는 해외 기업들이 초기에 택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대표사무소는 해외 기업에 종속하는 연락 사무소 형태로 베트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를 하거나 현지 간의 연락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윤 창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관련 절차, 일정 및 담당 기관은 상이합니다.

지사 (Branch)

지사는 베트남 법률(혹은 베트남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상업활동을 위해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분야에 해외 기업에 의한 지사 설립은 허용되나, 베트남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예: 베트남의 WTO약정)에 의해 법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건설, 프랜차이즈, 은행, 보험,

금융 서비스 등과 관련된 특정 사업분야에서만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사 형태는 베트남에서 일반적인 Commercial presence 형태는 아닙니다.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설립 목적에 따라 일정 및 담당 기관은 상이하며, 사무소와는 다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Legal entity)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투자프로젝트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할 계획투자국("DPI") 혹은 특수목적구역의 관리위원회를 통해 투자등록증("IRC")를 득해야 합니다. 단, 법률에 따라 투자사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IRC를 발행하기 전에 국회, 국무총리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원칙적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후 지역 계획투자국 산하 사업자등록사무소에 법인등록증("ERC")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구분	유한책임회사 ("LLC")	주식회사 ("JSC")	Partnership
사원 혹은 주주 요구 인원 수	1인 (1인 유한책임회사); 혹은 2인 이상, 단 50인 초과 불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최소 주주 3인; 최대 주주 인원 수에 대한 제한 없음	무한 책임 파트너십 (개별 파트너 2인 이상); 유한 책임 파트너십 (선택사항) (조직 혹은 개인)
사원 혹은 주주의 책임	회사에 등록된 자본 출자액에 한함	회사에 등록된 자본 출자액에 한함	무한 책임
			유한 책임 파트너십의 경우 회사에 등록된 자본 출자액에 한함
채권 발행	가능	가능	불가능
지분 발행	불가능	가능	불가능
증권거래소 상장	불가능	가능	불가능

투자 인센티브

다음 기준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가 결정됩니다:

- 위치: 사회경제적 낙후 지역 혹은 특수목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산업군: 첨단기술산업, 사회화사업(예: 교육, 의료), 인프라 개발 등 기업 활동이 장려되는 경우;
- 기타: 투자규모가 크거나 부품소재산업 분야인 경우

투자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우대 법인세율 적용(일반 법인세율 보다 20% 낮은 세율), 법인세 면제 혹은 일정기간 감면;
- 수입관세: 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고정자산, 원자재 및 구성품의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토지임대 및 토지이용세: 면제 또는 감면

주식/자본 취득에 의한 투자

주식/자본 취득을 통한 투자는 관할DPI의 승인(M&A승인)이 필요 합니다. M&A승인은 특정 사업 분야나 거래를 통해 외국인 지분 비율이 51%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필요 합니다.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관할DPI에 사원/주주 등기 갱신 신청서와 신규 투자자 등기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 약정에 의한 투자

계약상 약정에 의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업협력계약(BCC)과 민관협력(PPP)이 있습니다. BCC를 등록하기 위해 우선 관할 DPI 또는 특별 목적 구역의 관리 위원회에 IRC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IRC 취득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큰 투자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행 전에 국회, 국무총리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할DPI의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COR")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PPP등록 절차는 IRC관련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당국의 다양한 승인과 평가 및 ERC 신청이 필요합니다.

Licensing Process and Timeline

No.	투자 형태	투자 절차	유관 기관	법정기일
1	법인 설립	(1) 투자등록증("IRC") 신청	관할 기획투자국("DPI"); 혹은 특수목적구역의 관리위원회	15 일
		(2) 법인등록증("ERC") 신청	관할 DPI 산하 사업자 등록 사무소	3 영업일

Note:

(1) 법률 규정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의 경우 IRC의 발행 전 국회, 국무총리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2	주식/자본 취득에 의한 투자	(3) M&A승인 신청	관할 DPI	15 일
		(4) 신규 주주(사원)의 갱신 신청	관할 DPI 산하 사업자 등록 사무소	3 영업일
		(5) 신규 투자자 업데이트 신청	관할 DPI	10 영업일

Note:

(3)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사업 운영; 혹은
- 지분 거래 결과,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No.	투자 형태	투자 절차	유관 기관	법정기일
3	계약상 약정에 의한 투자			
		사업협력계약 (BCC)	(6) IRC 신청	관할 기획투자국("DPI"); 혹은 특수목적구역의 관리위원회
		(7) 외국인 투자자 사무소를 위한 운영등록증("COR") 신청	관할 DPI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	15 일
	민간협력계약 (PPP)	(8)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승인	정부/ 지방 인민위원회	30 일
		(9) 타당성 평가	국가 위원회, 혹은 장관이 지정한 자 혹은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	30 - 90 일
		(10) IRC 신청	기획투자부 혹은 지방 인민위원회	25 일
		(11) ERC 신청	(4) ERC 신청	3 영업일

Note:

(8) 법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IRC발행 전 국회, 국무총리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abour and Employment

채용 Recruitment

노동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FIE")는 베트남 직원을 직접 모집하거나 공인된 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후 FIE는 채용된 직원 명단을 지방 노동부에 제출하고, 직원의 활용 및 변경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Labour contract

노동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은 다음 중 한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무기한 근로 계약;
- 확정 기간(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근로 계약;
- 계절별 혹은 특정 일자리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고용주는 근로자와 최대 두번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한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Notice for termination

고용주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근로 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 조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기계약직은 12개월 연속, 확정계약직은 6개월 연속, 계절 혹은 특정 기간 계약의 경우 절반 이상);
- 법률에 의한 자연재해, 화재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주가 생산량 및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경우;
- 근로계약의 일시 중단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주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무기한 근로계약의 경우 최소 45일;
-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최소 30일; 혹은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및 12개월 미만의 계절별 혹은 특정 근로 계약의 경우 최소 3일

근무 시간 Working hours

정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주 6일 근무 기준 48시간)입니다. 고용주들은 시간별, 일별 혹은 주별로 근로시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군의 경우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초과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월 30시간 연 20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근무시간이 200시간을 넘을 경우, 고용주는 관할 지방노동청("DOLIS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간 300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 Wage rates

베트남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래 언급될 PIT 비용과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기타 의무들로 인해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총 근로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거주 형태와 보수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취업허가, 거주자등록, 보험 등 해외 주재원 채용과 관련된 다른 행정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FIE나 기타 해외 기관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정부가 정한 지역 분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연차 Annual leave

법적 공휴일 외에, 정상적인 조건하에 12개월을 근무한 근로자는 12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갖게 됩니다. 또한 5년 주기로 연차 휴가는 하루씩 늘어나게 됩니다. 특정 지역, 연령, 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연차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Severance allowance

2009년 1월 1일부터 사회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대체하는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보험제도 (2008년 12월 31일 이전 근로 기간 포함)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 전 6개월 동안의 월평균 급여의 50%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근속 기간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미만 제외;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봄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 봄

노동조합 Trade unions

회사가 영업을 시작 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개별 노동자와 노조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국내외 투자여부 불문)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료 산출에 기준이 되는 총 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조지원금의 65%를 단위 노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방해하는 기업의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비자 및 임시거주증

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아세안 등 비자가 면제되는 몇몇 국가의 외국인을 제외하고 미리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몇몇 특수한 상황(친인척 장래, 중증 친인척 방문, 긴급 기술지원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 베트남 영사관이 없는 국가에서의 출국 등)에서는 비자 발급이 입국 시 발급되기도 합니다.

베트남과 비자발급면제에 관한 상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임시 거주 외국인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증의 기간은 노동허가서 유효 기간과 동일합니다(최대 2년).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인은 베트남 출입시 비자발급이 면제됩니다.

노동허가서 Work permits

법률에서 규정한 면제 사례를 제외한 모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인은 “전문가”, “경영진/임원” 또는 “기술직” 분류에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최소 30일 전에 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외국인 채용 승인을 받은 후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최소 15 영업일 전까지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범죄조회서, 건강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허가서는 24개월간 유효하며 법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기업은 행정관리 목적으로 DOLISA에 통보는 해야 합니다.

Banking and Foreign Exchange Control

계좌 개설 - 직접 투자

FIEs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BCC 혹은 PPP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직접 투자 자본 계좌(DICA)를 개설해야 합니다.

특히 FIE는 매일 발생하는 거래를 위해 허가된 신용기관에 외화 경상계좌와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E는 베트남 주 은행("SBV")의 승인을 받아 역외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 - 간접 투자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간접투자를 하기위해 베트남 Dong(동)으로 간접투자자본계좌(IICA)를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외화 투자자본은 베트남동으로 전환해야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외화거래 제한

베트남 동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없으며, 여전히 외화 (특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모든 통화거래는 베트남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며, 외화를 이용한 거래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외국인 투자기업은 일정 조건하에서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외화 거래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 대금 지불, 해외에서 체결된 대출계약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특정 거래로 제한되는 외화 국외 유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외화 국내 유입은 SBV의 제약을 덜 받게 됩니다.

외환 서비스는 오직 은행, 비은행 신용기관 및 기타 공인 기관을 통해서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송금 규정

직/간접 투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VND 은 해외송금 목적으로 허가된 신용기관을 통해 외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 송금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 수익송금 통지서를 수익 송금일 기준 최소 7영업일 전까지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있는 자국 은행을 통해 외화를 사들여 본국에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단 외화에 대한 매입 권리는 있지만, 은행이 매각 의무를 갖지는 않습니다.

외화의 가용성은 시장 유동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거래 은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베트남에서 주 거래 은행을 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Land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 소유자인 국가가 사용권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여합니다. 토지의 개인소유는 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즉 토지 사용권 ("LUR"))를 통해 본질적인 법적 소유권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 및 법인에게 LUR을 할당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LUR 및 토지부속자산에 대한 권리는 토지 사용권과 주택 소유권 및 부지에 부착되는 자산 소유권 증명("LURC")에 기재됩니다. LURC에는 토지 이용의 목적과 이용에 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 이용자"가 되기 위해(LUR을 보유하기 위해) FIE를 베트남에 설립해야 합니다.

FIE는 100% 자회사이거나 조인트벤처 ("JVC") 혹은 베트남 현지 회사의 지분을 과반수 이상 취득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FIE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LUR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교부하는 경우
-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
- 특정 임대인(전대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등록된 지역 혹은 FIE 개발자 포함)
- 베트남 현지 JVC 참여를 통한 LUR 취득
- 부동산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LUR 취득.

Intellectual Property

베트남법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의 유형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IPRs")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품종권리 등으로 조직이나 개인(베트남인 또는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갖는 권리입니다.

베트남 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및 관련 저작권; 공연, 오디오 및 시각 녹음,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운반하는 위성 신호에 대한 저작권
- 발명, 산업 디자인,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 설계, 사업상 기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산업 재산권
- 생식 및 수확 물질을 포함한 품종권리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한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CPTPP)에 따라 더욱 강화됩니다. CPTPP는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외에도 IPR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모방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Appendices

Appendix 1 – Foreign Contractor Tax Withholding

Nominated rates of withholding tax are specified for foreign contractor tax as of 31 December 2019:

Payment type	VAT withholding	Income tax withholding*
Import of goods into Vietnam with associated supply of services	Exempt	1%
Imported services	5%	5%
Services associated with imported machinery	3%	2%
Restaurant, hotel and casino management services	5%	10%
Services associated with installation or construction (with the supply of assets)	3%	2%
Services associated with installation or construction (without the supply of assets)	5%	2%
Leasing	5%	5%
Transportation	3%	2%
Interest	Exempt	5%
Financial derivatives	Exempt	2%
Reinsurance	Exempt	0.1%
Insurance	Exempt or 5%	5%
Royalties	Exempt or 5%	10%
Transfer of securities	Exempt	0.1%
Other activities	2%	2%

Appendix 2 -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Nominated rates of withholding tax are specified within the following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Country	Interest	Dividends	Royalties
Non-Treaty Rate	5%	0%	10%
Treaty Rate			
Algeria *	15	**	15
Australia	10	**	10
Austria	10	**	7.5 / 10
Azerbaijan	10	**	10
Bangladesh	10	**	15
Belarus	10	**	15
Belgium	10	**	5 / 10 / 15
Brunei Darussalam	10	**	10
Bulgaria	10	**	15
Canada	10	**	7.5 / 10
China, People's Republic	10	**	10
Cuba	10	**	10
Croatia	N/A	**	N/A
Czech Republic	10	**	10
Denmark	10	**	5 / 10
Egypt *	15	**	15
Estonia *	10	**	7.5 / 10
Finland	10	**	10
France	0	**	10
Germany	10	**	7.5 / 10
Hong Kong	10	**	7 / 10
Hungary	10	**	10
Iceland	10	**	10
India	10	**	10
Indonesia	15	**	15
Iran	10	**	10
Ireland	10	**	5 / 10 / 15
Israel	10	**	5 / 7.5 / 15
Italy	10	**	7.5 / 10
Japan	10	**	10

Country	Interest	Dividends	Royalties
Kazakhstan	10	**	10
Korea (North)	10	**	10
Korea (South)	10	**	5 / 15
Kuwait *	15	**	20
Laos	10	**	10
Latvia *	TBC	**	
Luxembourg	10	**	10
Macau	10	**	10
Macedonia *	10	**	10
Malaysia	10	**	10
Malta	10	**	5/ 10/ 15
Mongolia	10	**	10
Morocco	10	**	10
Mozambique	10	**	10
Myanmar	10	**	10
Netherlands	10	**	5 / 10 / 15
New Zealand	10	**	10
Norway	10	**	10
Oman	10	**	10
Pakistan	15	**	15
Panama	10	**	10
Palestine	10	**	10
Philippines	15	**	15
Poland	10	**	10 / 15
Portugal	10	**	7.5 / 10
Qatar	10	**	5 / 10
Romania	10	**	15
Russia	10	**	15
San Marino	10 / 15	**	10 / 15
Saudi Arabia	10	**	7.5 / 10
Serbia	10	**	10
Seychelles	10	**	10
Singapore	10	**	5 / 10
Slovakia	10	**	5 / 10 / 15
Spain	10	**	10
Sri Lanka	10	**	15
Sweden	10	**	5 / 15
Switzerland	10	**	10
Taiwan	10	**	15
Thailand	10 / 15	**	15
Tunisia	10	**	10
Turkey *	10	**	10

UAE	10	**	10
Ukraine	10	**	10
United Kingdom	10	**	10
United States of America *	10	**	5 / 10
Uruguay	10	**	10
Uzbekistan	10	**	15
Venezuela	10	**	10

* Not in force as of 30 June 2019

** The payment of dividends to non-residents are exempt from withholding tax pursuant to domestic law.

Appendix 3 – Free Trade Agreements

Free Trade Agreements 30 September 2019:

No.	FTA	Signed date	Effective date	C/O	Member states
FTAs in effect					
AANZFTA	27 February 2009	01 January 2010	Form AANZ	ASEAN, Australia, New Zealand	
ACFTA	29 November 2004	July 2005	Form E	ASEAN, China	
AIFTA	24 October 2009	01 January 2010	Form AI	ASEAN, India	
AJCEP	01 April 2008	01 December 2008	Form AJ	ASEAN, Japan	
AKFTA	24 August 2006	June 2007	Form AK	ASEAN, South Korea	
ATIGA	26 February 2009	17 May 2010	Form D	ASEAN	
CPTPP	08 March 2018	14 January 2019	Form CPTPP	Vietnam, Canada, Mexico, Peru, Chile, New Zealand, Australia, Japan, Singapore, Brunei, Malaysia	

No.	FTA	Signed date	Effective date	C/O	Member states
VCFTA		11 November 2011	01 January 2014	Form VC	Vietnam, Chile
VJEPA		25 December 2008	01 October 2009	Form VJ	Vietnam, Japan
VKFTA		05 May 2015	20 December 2015	Form VK	Vietnam, South Korea
VN – EAEU FTA		29 May 2015	05 October 2016	Form EAV	Vietnam, Russia, Belarus, Armenia, Kazakhstan, Kyrgyzstan
AHKFTA		12 November 2017	11/06/2019 in Hong Kong (China), Laos, Myanmar, Thailand, Singapore, & Vietnam	Form AHK	ASEAN, Hong Kong (China)
Signed FTAs, not yet in effect					
EVFTA		30 June 2019	Not ratified yet	not available	Vietnam, European Union (EU)
FTAs under negotiation					
RCEP		Negotiations commenced in Mar. 2013		not available	ASEAN, China, South Korea, Japan, India, Australia, New Zealand
Vietnam – EFTA FTA		Negotiations commenced in May 2012		not available	Vietnam, EFTA (Switzerland, Norway, Iceland, Liechtenstein)
Vietnam – Israel FTA		Negotiations commenced in Dec. 2015		not available	Vietnam, Israel

Appendix 4 – Personal Income Tax

Vietnamese tax **resident** individuals as subject to PIT rates on employment income as of 30 June 2019 as follows:

Employment income Amount (VND million)	USD Exchange Equivalent (1:23,000) Estimate	Tax rate
0 – 60m	0 – \$2,600	5%
60m – 120m	\$2,600 – \$5,200	10%
120m – 216m	\$5,200 – \$9,400	15%
216m – 384m	\$9,400 – \$16,700	20%
384m – 624m	\$16,700 – \$27,100	25%
624m – 960m	\$27,100 – \$41,700	30%
> 960m	> \$41,700	35%

Vietnamese **non-resident** individuals are subject to a flat 20% PIT rate on employment income as at 31 December 2019

Vietnamese tax **resident** and **non-resident** individuals as subject to PIT rates on other (non-employment) income at 30 September 2019 as follows:

Category of taxable income	Tax rate
Sale of securities (listed shares)	0.1% of sale proceeds
Business income	0.5% - 5%
Real estate sales	2% of sales proceeds
Interest, dividends, royalties	5%
Gifts and prizes and lottery winnings and inheritance	10%
Sale of non-listed shares	20% of capital gain

Appendix 5 – Special Sales Tax Rates

Special Sales Tax rates as of 30 June 2019:

Goods or services	Tax rate
Tobacco products (cigarettes and cigars)	75%
Beer, wine and spirits (depending on alcoholic content)	65%, 35% or 65%
Automobiles, motorcycles (> 125cc)	10% - 150%, 20%
Airplanes, boats	30%
Petroleum	7% - 10%
Air conditioners (< 90,000BTUs)	10%
Cards (playing cards for gaming in Casinos)	40%
Lottery, casino, jackpot games	15%, 35%, 35%
Discotheque, karaoke, massage services	40%, 30%, 30%
Entertainment services with gambling	30%
Golf services	20%

Appendix 6 –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R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rates as of 30 June 2019:

Goods or products	Unit of tax	Tax rate (VND)/unit
Petroleum products	Litre or KG	300 - 3,000
Coal	ton	10,000 - 20,000
Gasses (specified)	kg	4,000
Chemical (specified)	kg	500 - 1,000
Plastic bags (non biodegradable)	kg	40,000

KPMG in Vietnam

KPMG was established in Vietnam in 1994, at a time when Vietnam was opening its doors to foreign investment.

KPMG는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프놈펜(캄보디아)에 오피스가있는 베트남 최대의 Professional firm입니다. KPMG베트남은 1,4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의 주요 업무 외에도 여러가지 인증/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감사
- Deal 자문, 세무 및 법률서비스
- 경영 컨설팅

KPMG는 또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감사, 세금, 법률 및 자문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PMG는 전문 서비스 산업의 리더로서 베트남 정부 및 국제기구에 베트남의 개혁 및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정기적으로 조연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KPMG Tax and Advisory Limited

Hanoi Korean Desk

Lee, Chi Hyun(이치현 회계사),

Senior Manager

E: chiyunlee1@kpmg.com.vn

HCMC Korean Desk

Lee, Jun Seok(이준석 회계사),

Senior Manager

E: junseoklee2@kpmg.com.vn



KPMG Offices

Hanoi

46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72 Building, Plot E6, Pham Hung Street,
Cau G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South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 +84 (24) 3946 1600

F: +84 (24) 3946 1601

E: kpmghanoi@kpmg.com.vn

Ho Chi Minh City

10th Floor, Sunwah Tower,
No. 115, Nguyen Hue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 (28) 3821 9266

F: +84 (28) 3821 9267

E: kpmghcmc@kpmg.com.vn

Danang

Unit D3, 5th Floor, Indochina Riverside Tower,
No. 74, Bach Dang Street, Hai Chau 1 Ward,
Hai Chau District, Danang, Vietnam

T: +84 (236) 351 9051

F: +84 (28) 3821 9267

E: kpmgdanang@kpmg.com.vn

© 2020 KPMG Limited, KPMG Tax and Advisory Limited, KPMG Legal Limited, all Vietnamese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kpmg.com.vn

